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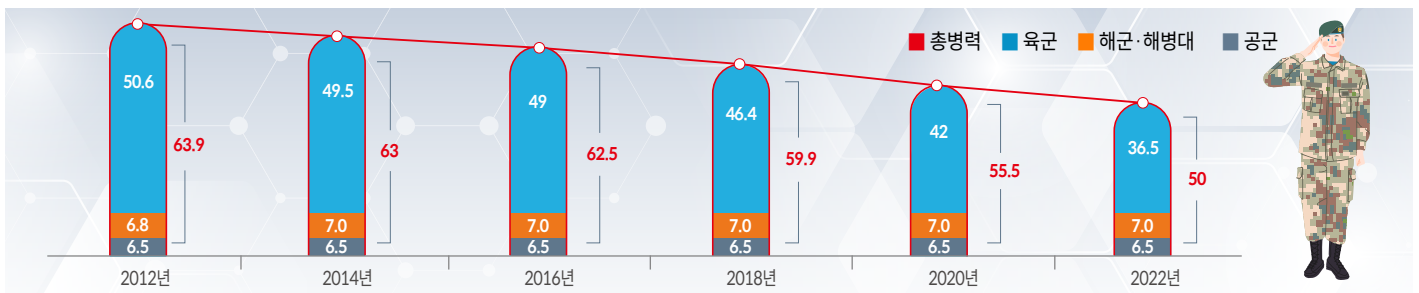
# 데이터로 보는 병역자원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감소는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상비병력 규모, 간부 비율, 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병역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21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내용을 소개한다.

### 병력규모 추이(2012년~2022년)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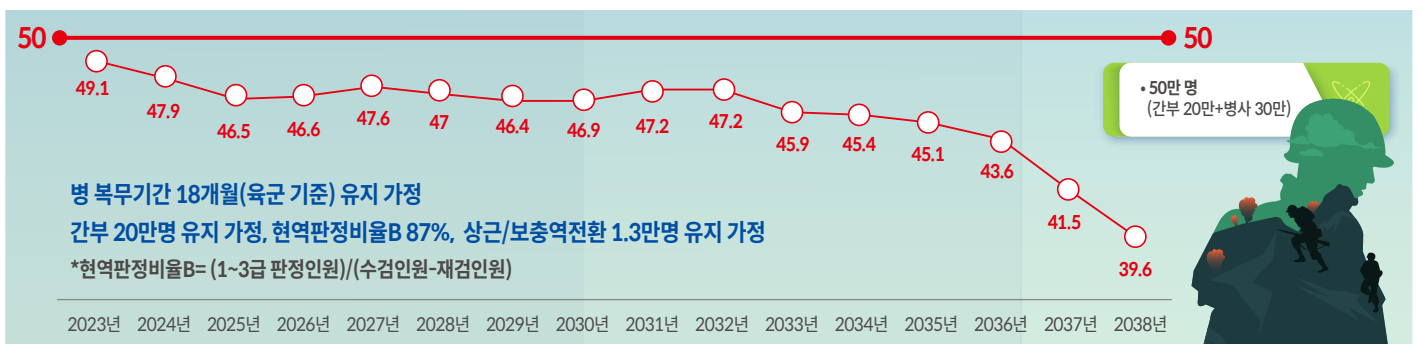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2012~2022)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50만여 명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2 국방백서의 63만 9천여 명과 비교해 약 28%에 달하는 13만 9천여 명이 감소하였다.

### 미래 병력수급 전망 시뮬레이션

(단위: 만 명)



출처: KIDA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2023)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유지 등의 가정하에 향후 상비병력 수급을 예측한 결과, 15년 후인 2038년에는 39만 6천여 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간부(20만 명)가 현역 병사(19만 6천 명)보다 많은 구조로 변화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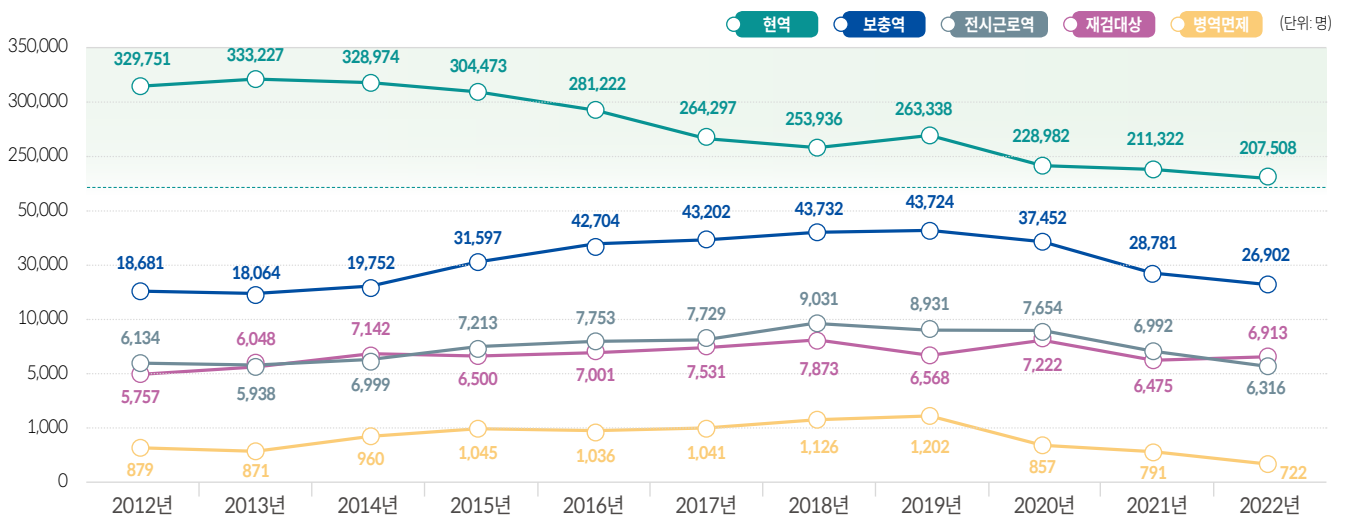
## 현역병 복무기간 변화

| 연도       | 복무기간(개월) |         |         | 조정사유                                         |
|----------|----------|---------|---------|----------------------------------------------|
|          | 육군·해병    | 해군      | 공군      |                                              |
| 1952년 이전 | 전역제도없음   |         |         |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불가                  |
| 1953년    | 36       | 36      | 36      | 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 1959년    | 33       | 36      | 36      | 병역부담 완화                                      |
| 1962년    | 30       | 36      | 36      | 병역부담 완화                                      |
| 1968년    | 36       | 39      | 39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 1977년    | 33       | 39      | 39      |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
| 1979년    | 33       | 35      | 35      |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
| 1984년    | 30       | 35      | 35      | 병역부담 완화                                      |
| 1990년    | 30       | 32      | 35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 1993년    | 26       | 30      | 30      |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
| 1994년    | 26       | 28      | 30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 2003년    | 24       | 26      | 28      | 병역부담 완화                                      |
| 2004년    | 24       | 26      | 27      | 공군병 획득난 해소                                   |
| 2008년    | 24 → 18  | 26 → 20 | 27 → 21 |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
| 2011년    | 21       | 23      | 24      |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
| 2018년    | 21 → 18  | 23 → 20 | 24 → 22 |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병역부담 완화(「국방개혁 2.0」)  |
| 2020년    | 18       | 20      | 22 → 21 | 「국방개혁 2.0」 후속 조치                             |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

■ 1953년 6·25전쟁 휴전으로 장기복무자의 전역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때 육·해·공군과 해병 모두 36개월로 복무기간을 확정했다. 1968년 1·21사태로 복무기간이 연장된 적이 있었으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단축되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포함)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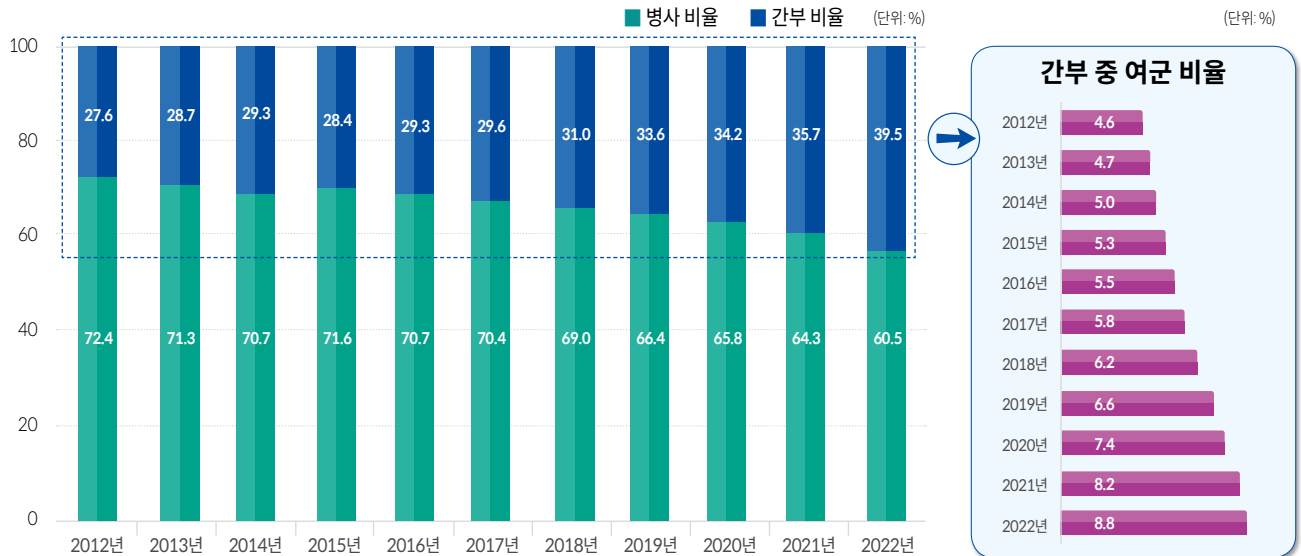
## 연도별 병역처분 현황(2012년~2022년)



출처: 병무청, 「2022 병무통계연보」

■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20년부터는 30만 명 대를 밑돌고 있다. 2022년 병역검사를 받은 인원은 248,361명이며 그중 현역판정을 받은 인원은 207,508명이다.

## 상비병력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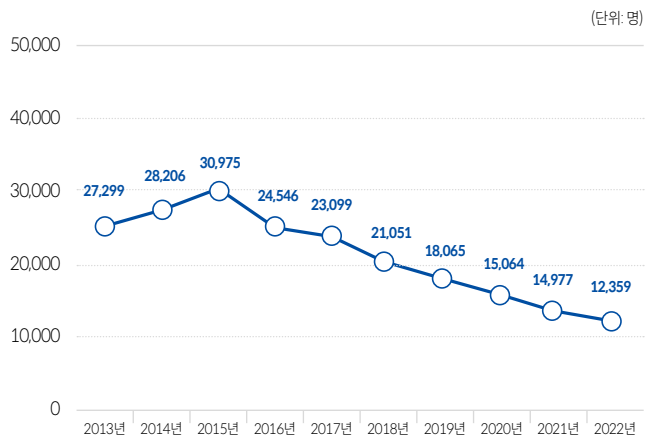


출처: 국방부 제출자료(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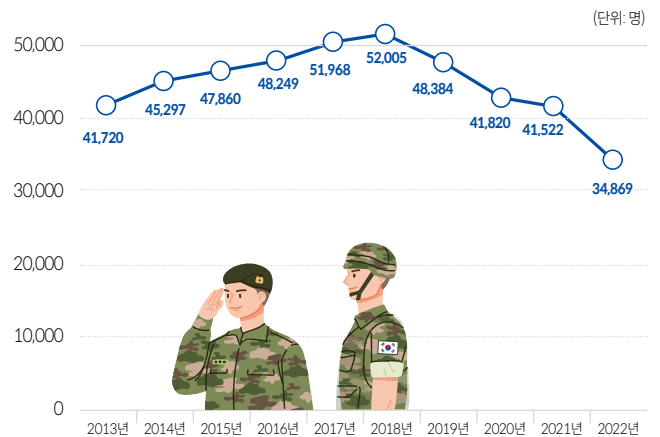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은 간부의 점진적 증원을 통해 전체 상비병력 중 간부 비율을 40%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간부(장교 및 부사관)는 전체 상비병력의 39.5%를 차지하며, 이는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할 때 약 12% 증가한 수치다.
- 아울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를 규정한다. 간부 중 여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 전체 간부 중 4.6%를 차지하던 여군은 2022년 8.8%에 도달하였다.

## 간부 지원 현황 (2013년~2022년)

### 장교 지원 현황(학군/학사)



### 부사관 지원 현황



출처: 국방부 제출자료(2023)

-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간부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간부의 지원 현황도 감소추세를 보인다. 2022년 학군·학사장교 지원 인원은 12,359명으로 불과 5년 전인 2017년 보다 46.5%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부사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34,869명으로 2017년보다 32.9% 감소하였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73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제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 ①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② 여군 인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의 비율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 ② 제1항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비병력은 각 군별로 최고의 전력체계를 유지하고, 육군·해군·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합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구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역하게 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고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의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 ①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한 군별·연도별 추진목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
| 한기호의원<br>[2107102] | 국방개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병력감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전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에 대해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이에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정부<br>[2101335]    |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Data&Law」는 입법과통계서비스(<https://argos.nanet.go.kr>),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20116-001998-14

ISSN 2982-6241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